2020

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설명회

중소벤처기업부

KT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

중소벤처기업부 KT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

CONTENTS

2020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설명회

[Ⅰ] 사업개요

[Ⅱ] 사업내용

[Ⅲ] 신청방법

[Ⅳ] 간접지원사업

[Ⅴ] 유의사항

사업개요

1 사업개요

- 해외규격인증획득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증획득 소요비용 일부(50% 또는 70%)지원

2 지원대상

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(전년도 직접수출액 5,000만불 미만)

3 제외대상

휴·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	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
민사집행법 및 전국은행연합회에 채무불이행으로 등록된 기업	사업(중국인증집중지원사업 포함)이 진행 중 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
사업(중국인증집중지원사업 포함)에서 제한조치 받은 기업으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	지자체 및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인증획득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기업
'18년부터 사업에 참여하여 인증획득 기업 중 기 지원받은 동일 제품(HS CODE), 동일 인증 신청 기업 (단, 신규로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의 바이어가 해당 인증 요구 시 지원 가능하며 2년 내에 수출실적확인)	사업 공고일 기준 이미 획득한 인증에 대한 비용 신청 기업

① 지원규모

- 전체 약 1,200개사 내외 지원
- 신청기업 수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안배 및 선정

② 지원내용

- 공고된 해외규격인증(424개 인증) 인증획득비용 일부 지원

※ 공고된 인증 이외의 규격인증은 "기타규격인증"로 신청 가능하며,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

지원분야	기업당 출연금 한도			지원 인증건수	인증분야별 개별한도
	최대한도(천원)	매출 30억원 이하	매출 30억 초과		
해외규격인증 (그 외 국가)	100,000	70%	50%	최대 4건	운영지침 [별지 제3호 참조]
중국·신남방·북방 국가 규격인증				최대 15건	

③ 지원항목

- 인증비 : 인증서 발행비, 인증신청비, 연회비, 심사비, 법정대리인 선임비 등
- 시험비 :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(TEST)한 비용
- 컨설팅비 : 인증획득을 위한 기술 자문료, 서류 대행료 등

❶ 중국·신남방·북방 국가 규격인증

- 신규 수출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중국·신남방·북방 국가의 인증은 최대 15건 지원

예) NMPA 화장품 인증-립스틱(A)/립스틱(B)/립스틱(C)등 인증서 발행 건수별로 신청시 1건으로 간주

신남방국가 (11개)

- ☑ 브루나이
- ☑ 캄보디아
- ☑ 인도네시아
- ☑ 라오스
- ☑ 말레이시아
- ☑ 미얀마
- ☑ 필리핀
- ☑ 싱가포르
- ☑ 태국
- ☑ 베트남
- ☑ 인도

신북방국가 (13개)

- ☑ 러시아
- ☑ 우크라이나
- ☑ 벨라루스
- ☑ 카자흐스탄
- ☑ 우즈베키스탄
- ☑ 투르크메니스탄
- ☑ 키르기스스탄
- ☑ 타지키스탄
- ☑ 아제르바이잔
- ☑ 조지아
- ☑ 아르메니아
- ☑ 몰도바
- ☑ 몽골

동시 신청 방법 예시

인 증	신청건수	총 신청건수
해외규격인증(그 외 국가)	3건	4건
중국·신남방·북방 국가 규격인증	1건 (최대 15건을 신청해도 1건으로 간주)	

❷ 신청방법 예시

• 잘못 신청한 사례

◆ 신청내용

신청구분*	수출 국가구분	수출 예정국가	인증명칭	신청품목	분야코드	품목분야 (HS code)	예상 소요비용**	예상 협약금액***
신청 1	중국·신남방·북방	중국	NMPA	기초화장품 8종	DoC-NPCS1-H	화장품 (330499)	40,000 천원	32,900 천원
계							40,000 천원	32,900 천원

• 올바르게 신청한 사례

◆ 신청내용

신청구분*	수출 국가구분	수출 예정국가	인증명칭	신청품목	분야코드	품목분야 (HS code)	예상 소요비용**	예상 협약금액***
신청 1	중국·신남방·북방	중국	NMPA	아끄네쁘리 NMF 크림	DoC-NPCS1	화장품 (330300)	3,850 천원	3,600 천원
신청 2	중국·신남방·북방	중국	NMPA	아끄네쁘리 스킨 토너	DoC-NPCS1	화장품 (330300)	3,850 천원	3,600 천원
신청 3	중국·신남방·북방	중국	NMPA	아끄네쁘리 폼클렌저	DoC-NPCS1	화장품 (330300)	3,850 천원	3,600 천원
신청 4	중국·신남방·북방	중국	NMPA	아끄네쁘리 안티 트러블펜	DoC-NPCS1	화장품 (330300)	3,850 천원	3,600 천원
계							15,400 천원	14,400 천원

1 추진절차

- 사업계획 공고 — 중소벤처기업부
- 신청 · 접수 — 중소기업·지방청
- 평가 — 지방청
- 지원대상 기업선정 — 중기부·운영위원회
- 협약체결 — 참여기업↔관리기관
- 인증획득 추진 — 참여기업
- 중간보고(필요시) — 참여기업→관리기관
- 완료보고 — 참여기업→관리기관
- 인증사실확인 — 관리기관
- 정부지원금 지급 및 사후관리 — 관리기관

2 추진일정

사업명	구분	1차	2차	3차
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	공고일	1.30	5.01	8.01
	신청·접수	2.03~2.28	5.01~5.29	8.01~8.31
	평가·선정	3.02~4.10	6.01~7.10	9.01~10.12
	협약체결	4.14~4.23	7.13~7.22	10.13~10.22

※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음

① 평가

- 지방청에서 관계전문가를 활용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[운영지침 별표 제4호 참조]
  - 평가 항목 : 인증획득 필요·가능성, 수출 성장성 및 다변화, 수출 의지 등
-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제외 대상인 기업은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, 신청을 반려함

② 선정

- 관리기관에서 전문가 7인 내외로 '운영위원회'를 개최하여 배정된 예산규모에 맞춰 지원대상 기업 선정
  - 탈락한 기업 중 첫걸음 기업 및 소·부·장 기업을 대상으로 배정된 예산의 각 10%범위 내에서 추가 경쟁을 통해 참여기업 선정

* 첫걸음기업 : SIMS에서 16년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(KOTRA) 소관 수출지원사업 지원 이력이 없는 기업

* * 소·부·장기업 : "소재·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에 근거하여 소재·부품전문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 (사이트 : http://www.mctnet.org/index.jsp 홈페이지 참조)

③ 기타유의사항

- 컨설팅기관을 활용하여 사업에 참여할 경우 복수의 컨설팅기관에서 비교견적을 받아 가격, 컨설팅기관의 지원 실적 등을 감안하여 결정 권장
  * 컨설팅기관 결정 후에는 담당 컨설턴트가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인증획득 절차 진행을 권장
- 컨설팅 없이 독자적으로 추진한 인증 또는 미등록 컨설팅기관을 활용한 인증은 컨설팅비를 제외한 인증비, 시험비만을 지원
- 인증획득 완료 후 실제 소요비용의 일부(50% 또는 70%)를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성공조건부로 사후 지급하는 사업임
  * 기업의 부담이 전혀 없게 하겠다는 일부 컨설턴트나 컨설팅기관의 허위 제안이 있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관리기관으로 신고
- 과제 협약금액은 "[운영지침 별지 제3호] 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/한도 기준 " 에 따라 결정되며, 고비용인증의 경우 제출한 견적서를 근거로 매출규모 비율을 적용하여 협약금액 결정
  * 단, 지원기업 선정 시 예산 상황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협약금액을 조정하여 선정할 수 있으며, 정부지원금은 협약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

1 주요변경사항

2019년 사업		2020년 사업
기업당 최대 4건 (중국·신남방·북방국가 인증의 경우 제한없음)	인증지원건수	기업당 최대 4건 (중국·신남방·북방국가 인증의 경우 최대15건)
2개 트랙 (1) 일반공모 / (2) 교육연계지원	운영방식 / 예산배분	2개 트랙 (1) 일반공모 / (2) CE의료기기 MDR 대응 지원
일반교육 미실시 심화교육 13회 실시	인증교육	일반교육 30회 / 심화교육 20회 실시 예정
단독추진기업 평가 항목 삭제 가점 : 교육연계지원, 타 수출사업연계	평가항목	수출계획 평가 항목 개편 가점 : 브랜드 K 기업, 청년글로벌마케터 등
평가 : 관리기관(KTR) 선정 : 선정위원회(지방청)	평가 / 선정	평가 : 지방청 선정 : 운영위원회(관리기관 운영)

신청방법

① 신청방법 절차

온라인 신청서 작성
1. 수출지원센터 접속
2. 회원가입 후 로그인
3. 사업신청 (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)

기업정보 입력
1. 업체기본정보
2. 대표자 정보
3. 과제 책임자 정보
4. 전년도 매출액

신청인증 내용입력
1. 인증 명칭
2. 품목코드(HS CODE)
3. 수출예정국가
4. 신청품목 등

구비서류 업로드
1. 필수제출서류
2. 평가항목별 제출서류

② 필수제출서류

- 사업 신청서 1부 (온라인 작성)
- 개인(신용)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(온라인 작성)
-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(온라인 작성)
- 직전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(전산 업로드)
-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(전산 업로드)
- 고비용인증 신청의 경우 : 시험·인증기관의 견적서(청구서) 또는 계약서 1부 (해당 시 전산 업로드 필수)

※ 평가항목별 제출 서류 : [별첨 제1-1호] 참조

-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(www.exportcenter.go.kr) → 수출지원사업 →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

신청방법

- 기존기업 : 로그인 / 신규기업 : 회원가입 후 로그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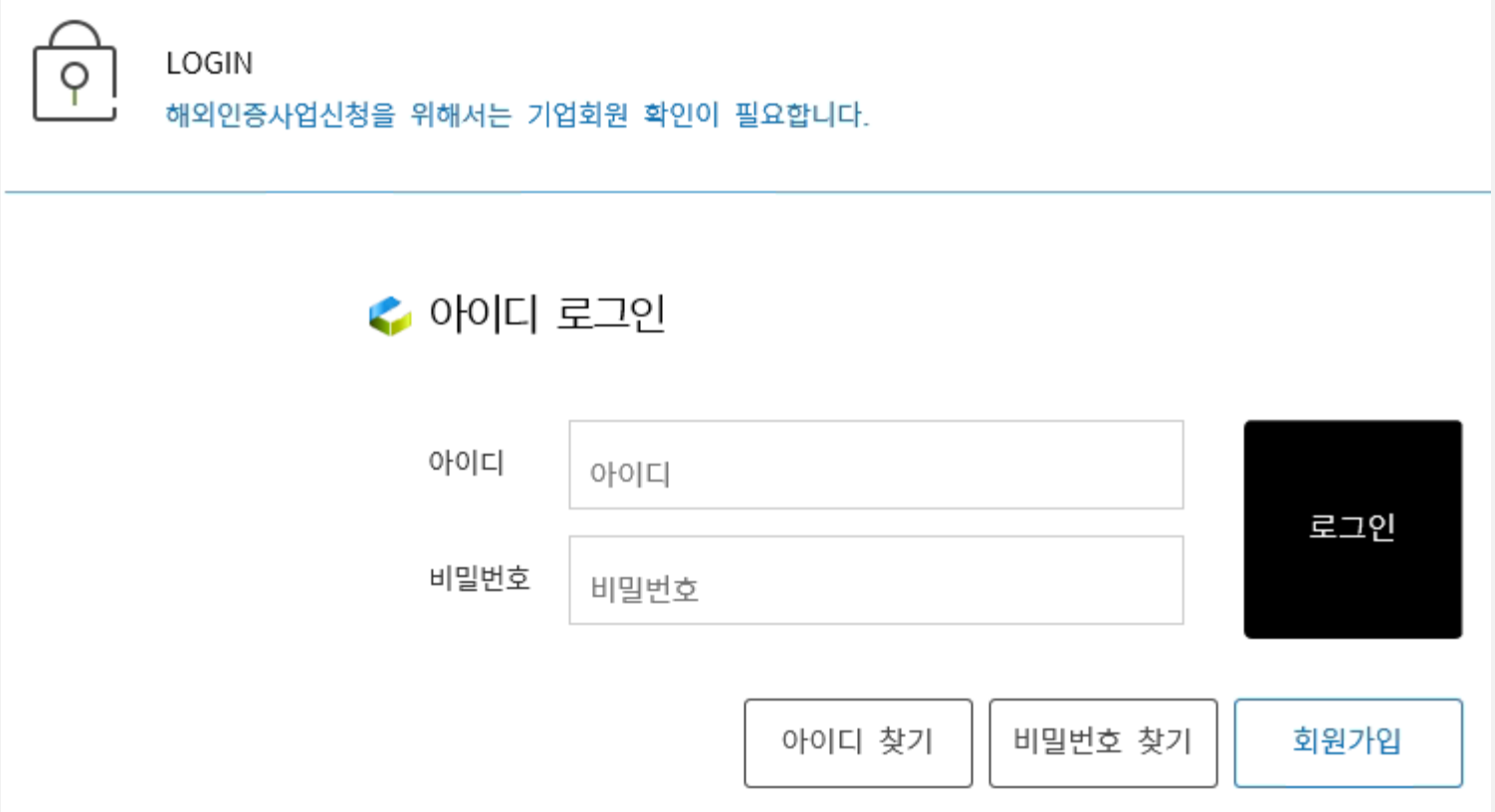

신청방법

① 신규 신청시 : 사업신청 → 차수 선택 → 신청

② 참여/진행중인 사업 : 현재 진행중인 사업(해외, 중국)이 있을 경우 안내(사업종료 후 신청가능)

③ 참여제한기간 : 현재 참여제한 사업(해외, 중국)이 있을 경우 제한기간 안내(제한기간 종료 후 신청가능)

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

- 사업소개
- 공지사항
- 공인인증서발급안내
- ① 사업신청
- 사업참여현황
- 중간정산금 신청 및 현황
- 부분완료보고서 등록 및 현황
- 변경 등록 및 현황
- 포기 등록 및 현황
- 교육신청

해외인증획득지원사업(~18년)

컨설팅 기관

진행사업목록

총 게시물 2건

지원사업 운영지침 [다운] | 신청서 작성 매뉴얼 [다운] | 평가표 및 제출서류 [다운]

순번	년도	차수	사업 구분	사업명	신청기간	신청구분
① 1	2020	1	일반사업	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공모지원	2020.02.03 ~2020.02.28	참여중

① 신청

② 참여/진행중인 사업	2020년 1차 사업에 참여/진행중입니다.
③ 참여제한 기간 (*참여제한 기간에는 사업에 참여불가)	해당없음

※ 사업(종전의 중국인증집중지원 포함)이 진행 중이거나 미완료, 참여 제한조치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은 신청 불가함

- 신청기업 정보 등록

01 기업정보등록 > 02 품목등록 > 03 일자리 평가 > 04 제출서류등록 > 05 동의서 > 06 신청완료

기업정보등록

※ 사업자등록증(본점소재지)의 정보와 동일한 내용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.

*기업명	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	*설립년월일	1969-04-01
*사업자번호	1288672714	법인번호	2850110216081
*사업의 종류(업태)	비영리	*사업의 종목(업종)	서비스
*주소	13810 검색 경기 과천시 교육원로 98 (중앙동) 1동 303호 수출인증지원팀		
*기업전화번호	02 - 2164 - 0000	기업팩스(FAX)	02 - 2164 - 0000

※ 사업관련 안내는 과제책임자 핸드폰번호 및 이메일로 발송되오니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오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에게 있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대표자 성명	홍길동		
*대표자 주민번호	000000 - 0000000		
*대표자 E-MAIL	mail	*대표자 핸드폰	010 - 0000 - 0000
*과제책임자 성명	홍수출	*과제책임자 직책	팀장
*과제책임자 E-MAIL	mail@ktr.or.kr	*과제책임자 핸드폰	010 - 0000 - 0000

- 신청 제품의 특성 및 기업 특성 중 해당 항목 체크 및 입력

*주요생산품목	테스트	
*매출액(전년도)	5,000 백만원 2019년도 재무제표증명서의 매출액 입력	지원비율구분: 전년도 매출액 30억 초과(50%)
제품특성 (0/1300byte)		
기업특성 – 인증획득 필요·가능성	☑ 시험·인증기관 접수증 및 견적서 (고비용인증의 경우 필수 제출) ※ 컨설팅기관 견적서 제출시 평가점수 미인정 / 단, 예상소요비용은 인정 ☑ 해외특허·상표(출원 또는 등록증, 전용실시권 포함) 보유기업 * 개인기업은 대표자, 법인은 법인명으로 등록 된 경우만 인정 ** 국내특허 미인정 ☑ 인증획득건수 * 공고된 해외규격인증에 한함(해외규격인증 목록 보기) ** 현재 보유중인 인증 중 유효기간 내 인증만 인정함 *** 동일한 인증은 1건으로 인정함 ☑ 수출계약서 * 수출계약서, Purchase order, Offer sheet, 수출의향서 등 수출관련 계약서(계약서 작성일자 기준 2019년, 2020년에 한함)	
기업특성 – 수출 성장성	☑ 용역/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서 * 관세청 미 집계 무체물(소프트웨어, 전자서적, 음향물 등) 수출실적을 보유한 기업에 한함 (유체물 수출실적(직접, 간접)을 보유한 기업은 해당 없음) 전년도 직접수출액($) 1,000 전전년도 직접수출($) 2,000	
기업특성 – 수출의지	☑ 경영주 또는 수출전담인력 수출관련(해외인증포함) 교육 이수 ※ 2019, 2020년 교육수료증에 한함 ☑ 수출전담인력(경영주 포함) 수출 관련 전공자(관련학과 포함) * 졸업증명서상의 학과((복수)전공만)에 무역, 통상, 국제, 통관, 수출과 관련된 졸업증명서만 인정 ** 순수과학, 공학, 경영학, 마케팅, 어학계열 등 수출과 관련되지 않은 학과(전공) 제외 ☑ 수출전담인력(경영주 포함) 수출 관련 자격증 보유 (자격증 목록 보기) ☑ 수출 전담조직 보유 ☑ 시장개척단 파견기업 ☑ 해외전시회 참가기업 ☑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기업 ☑ 해외지사 보유기업 ☑ 외국어 카다로그 ☑ 홈페이지(외국어) WWW.KTR.OR.KR	
기업특성 – 가점	☑ 여성기업	

※ 전산오류 또는 신청서 작성문의 : 02-2164-0173~8 / 관리기관: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(KTR)
※ 신청서 페이지 오류시 익스플로어(브라우저)를 업데이트 해보시기 바랍니다.
※ 기업특성에 체크한 항목들은 제출서류등록 단계에서 파일을 업로드 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저장 후 다음 버튼 클릭

초기화 ① 저장 ② 다음

- 품목 등록 테이블

품목 등록 및 수정 ※ 품목이 여러 건인 경우 "품목신규추가" 버튼으로 각각 등록

품목신규추가

인증명칭	검색	분야코드	
HSCODE	검색	품목분야	선택해주세요
수출예정국가	검색	신청품목	
인증예정기관 (인증기관명)		시험예정기관 (시험기관명)	
컨설팅예정기관 (컨설팅기관명)	검색	컨설턴트/ 연락처	
예상 소요비용	천원	예상협약금액	천원

※ 컨설팅예정기관명은 필수 입력사항임(단독 추진 또는 미등록컨설팅기관 이용시에도 필수 입력)

※ 예상소요비용 : 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필수 소요 비용으로 인증비·시험비를 합한 금액(컨설팅비, 재료비, 규격 구매비 등은 제외)

※ 예상협약금액 : 인증분야별 한도기준을 적용. 고비용인증의 경우 인증획득 총 인증획득비용 (컨설팅비용 한도포함)에 매출구분비율을 적용한 금액

저장 후 다음 버튼 클릭

이전 | 품목등록 | 품목수정 | 품목삭제 | 다음

- 공고된 인증 입력 방법 : 인증명칭 또는 인증설명 검색 → 인증서 선택 → 분야코드 선택

인증명칭	CE (유럽공동체마크) 검색	분야코드	DOC-CEEL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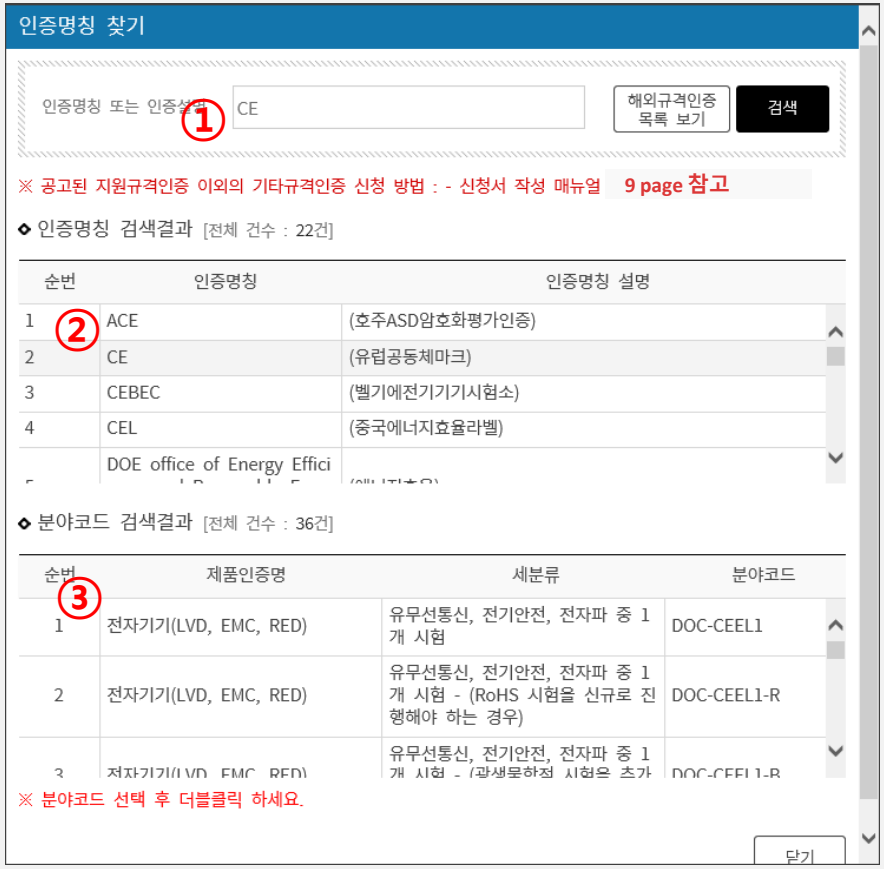

인증명칭 찾기

인증명칭 또는 인증설명 ① CE 해외규격인증 목록 보기 검색

※ 공고된 지원규격인증 이외의 기타규격인증 신청 방법 : - 신청서 작성 매뉴얼 9 page 참고

◆ 인증명칭 검색결과 [전체 건수 : 22건]

순번	인증명칭	인증명칭 설명
1 ②	ACE	(호주ASD암호화평가인증)
2	CE	(유럽공동체마크)
3	CEBEC	(벨기에전기기기시험소)
4	CEL	(중국에너지효율라벨)
	DOE office of Energy Effici	

◆ 분야코드 검색결과 [전체 건수 : 36건]

순번 ③	제품인증명	세분류	분야코드
1	전자기기(LVD, EMC, RED)	유무선통신, 전기안전, 전자파 중 1개 시험	DOC-CEEL1
2	전자기기(LVD, EMC, RED)	유무선통신, 전기안전, 전자파 중 1개 시험 - (RoHS 시험을 신규로 진행해야 하는 경우)	DOC-CEEL1-R
3	전자기기(LVD, EMC, RED)	유무선통신, 전기안전, 전자파 중 1개 시험 - (광생물학적 시험을 추가	DOC-CEEL1-B

※ 분야코드 선택 후 더블클릭 하세요.

닫기

① 인증명 검색

② 인증명칭 더블클릭 선택

③ 분야코드 더블클릭 선택

- 공고된 규격인증(424개) 이외의 기타규격인증 입력 방법

인증명칭	기타(수기입력) 검색 ④ 공고된 규격 이외의 인증명 수기입력	분야코드	DoC-ETC1

인증명칭 찾기

인증명칭 또는 인증설명 ① 기타 해외규격인증 목록 보기 검색

※ 공고된 지원규격인증 이외의 기타규격인증 신청 방법 : - 신청서 작성 매뉴얼 9 page 참고

◇ 인증명칭 검색결과 [전체 건수 : 1건]

순번	인증명칭	인증명칭 설명
1 ②	기타(수기입력)	기타(수기입력)

◇ 분야코드 검색결과 [전체 건수 : 2건]

순번	제품인증명	세분류	분야코드
1	인증서 발행	인증서 미발행	DoC-ETC1
2	인증서 발행	인증서 발행	CoC-ETC2

③

※ 분야코드 선택 후 더블클릭 하세요.

닫기

① 인증명에 "기타" 입력

② "기타(수기입력)" 더블클릭 선택

③ 분야코드 더블클릭 선택

④ 공고된 규격 이외의 인증명 수기 입력

- HS CODE 6 자리 입력 방법

HS CODE	841229 검색	품목분야 ③	기계설비
	수력엔진과 수력모터- 기타		

HSCODE 찾기

① HSCODE | 상세설명 모터 | 검색

※ HSCODE 모를 경우 : 관세법령정보포탈(사이트클릭) > 세계HS메뉴에서 검색된 HSCODE 중 앞 6자리

② ◆ HSCODE 검색 결과[전체 건수 : 18건]

순번	HSCODE	상세 설명
1	830120	모터차량에 사용되는 자물쇠
2	830230	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·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
3	840721	선박추진용 엔진- 아웃보드(outboard) 모터
4	841221	수력엔진과 수력모터- 리니어 액팅식(실린더)
5	841229	수력엔진과 수력모터- 기타
6	841231	압축공기식 엔진과 모터- 리니어 액팅식(실린더)
7	841239	압축공기식 엔진과 모터- 기타
8	401140	모터사이클용
9	890391	기타- 범선(보조모터를 부착하였는지에 상관없다)
10	890392	기타- 모터보트[아웃보드 모터보트(outboard motorboat)는 제외한다]

※ HSCODE 선택 후 더블클릭하세요.

1 2

닫기

① HS CODE 6자리 또는 상세설명으로 검색

② 검색결과 더블클릭 선택

③ 품목분야 구분이 제품과 상이할 경우 수정 가능

※ 산업분류코드(HS CODE)를 모를 경우 :

관세법령정보포탈 → 세계HS 메뉴에서 확인 가능

- 수출예정국가 및 신청품목 입력 방법

① 수출예정국가	그 외 수출국가 [검색] 미국	② 신청품목	화장품(A립스틱)
① 수출예정국가	중국·신남방·북방 수출국가 [검색] 태국	② 신청품목	화장품(A립스틱)

수출국가 정보 찾기

수출국가구분 전체 수출국가명 미국 검색

◇ 수출국가 검색 결과[전체 건수 : 1건]

순번	구분	수출국가명
1	그 외	미국

수출국가 정보 찾기

수출국가구분 중국·신남방·북방 수출국가명 태국 검색

◇ 수출국가 검색 결과[전체 건수 : 1건]

순번	구분	수출국가명
1	중국·신남방·북방	태국

① 수출 예정 국가 검색 후 선택

② 인증획득 예정 품목 입력

- 인증 · 시험 · 컨설팅예정기관명 입력

① 인증예정기관 (인증기관명)		② 시험예정기관 (시험기관명)	
③ 컨설팅예정기관 (컨설팅기관명)	검색	컨설턴트/ 연락처	
예상 소요비용	천원	예상협약금액	천원

※ 컨설팅예정기관명은 필수 입력사항임(단독 추진 또는 미등록컨설팅기관 이용시에도 필수 입력)
※ 예상소요비용 : 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필수 소요 비용으로 인증비·시험비를 합한 금액(컨설팅비, 재료비, 규격 구매비 등은 제외)
※ 예상협약금액 : 인증분야별 한도기준을 적용. 고비용인증의 경우 인증획득 총 인증획득비용 (컨설팅비용 한도포함)에 매출구분비율을 적용한 금액

① 인증서 발행 예정 인증기관명 입력

② 시험 의뢰 예정 시험기관명 입력

③ 컨설팅 예정기관명 필수 입력 → 입력 방법 다음 페이지 참고

신청방법

- 등록된 컨설팅기관과 함께 진행할 경우
- 입력방법 : 컨설팅기관 검색 → 컨설팅기관에 연락 후 진행 여부 확인 → 전용 KEY값 입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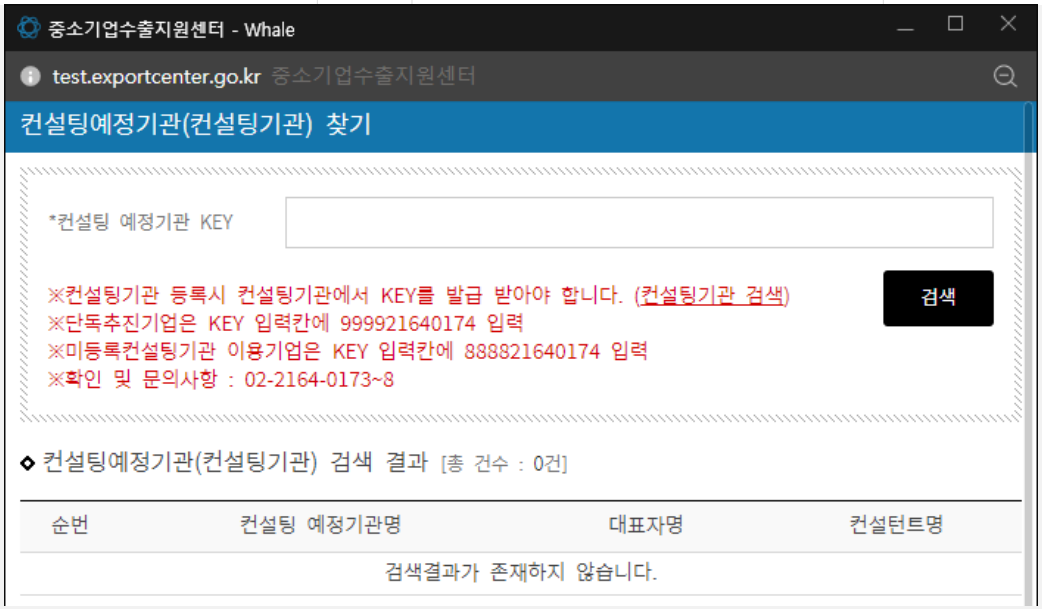

신청방법

- 신청하려는 제품의 품목분야가 등록된 컨설팅기관의 컨설턴트 품목분야에 있는지 확인 필요
- 기업의 신청제품 품목분야와 컨설턴트의 품목분야가 일치해야지만 해당 컨설턴트 선택 가능
- 만약 해당 컨설턴트가 없다면 다른 컨설팅기관 이용

(예시) <기업의 신청제품 품목분야>

산업분류코드 (HSCODE)	841229 검색 수력엔진과 수력모터- 기타	품목분야	기계설비

<컨설턴트의 등록된 품목분야 - 컨설팅기관 검색메뉴에서 조회 가능>

이름		연락처	
최초참여일		실태점검일	
보유자격		점검결과	
인증분야		품목분야	의료기기 및 용품,기계설비,공산품,전기전자
이메일		직위	
학력경력			
참여제한	~		
참여인증	총 5건		

- **미등록 컨설팅기관과 함께 진행할 경우 : 888821640174 KEY값 입력**

컨설팅예정기관(컨설팅기관) 찾기

*컨설팅 예정기관 KEY 888821640174

※컨설팅기관 등록시 컨설팅기관에서 KEY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. (컨설팅기관 검색)
※단독추진기업은 KEY 입력칸에 999921640174 입력
※미등록컨설팅기관 이용기업은 KEY 입력칸에 888821640174 입력

검색

◆ 컨설팅예정기관(컨설팅기관) 검색 결과 [총 건수 : 1건]

순번	컨설팅 예정기관명	대표자명	컨설턴트명
1	미등록기관	미등록	미등록

- **단독으로 인증획득 추진 진행할 경우 : 999921640174 KEY값 입력**

컨설팅예정기관(컨설팅기관) 찾기

*컨설팅 예정기관 KEY 999921640174

※컨설팅기관 등록시 컨설팅기관에서 KEY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. (컨설팅기관 검색)
※단독추진기업은 KEY 입력칸에 999921640174 입력
※미등록컨설팅기관 이용기업은 KEY 입력칸에 888821640174 입력

검색

◆ 컨설팅예정기관(컨설팅기관) 검색 결과 [총 건수 : 1건]

순번	컨설팅 예정기관명	대표자명	컨설턴트명
1	단독추진기업	단독추진	단독추진

- 예상 소요비용 입력 방법 및 예상 협약금액 내용

① 예상 소요비용		천원	② 예상 협약금액		천원

① 예상소요비용 : 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필수 소요 비용으로 **인증비·시험비를 합한 예상 소요비용 입력**
(컨설팅비, 재료비, 규격 구매비 등은 제외)

② 예상 협약금액 :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자동 입력

예 1) 예상 소요비용 입력 금액이 30,000천원 미만일 경우 : 인증분야별 한도 기준에 따름

예 2) 예상 소요비용 입력 금액이 30,000천원 이상일 경우 :

- 컨설팅기관 또는 미등록기관 신청기업 : 예상 소요비용 * 지원비율 % + (컨설팅인정비용 * 지원비율 %) 자동계산
- 단독추진기업 : 예상 소요비용 * 지원비율 %

- 버튼 기능 안내

① 품목신규추가

- 입력 항목 초기화 기능

② 품목등록

- 입력한 품목 등록 기능
- 복사 추가 등록 기능

※ 품목등록리스트에서 등록한 품목 선택 → 입력 내용 확인 → 입력 내용 수정 후 추가 등록 기능

③ 품목수정

- 품목등록리스트에서 등록한 품목 선택 후 입력 내용 수정 기능

④ 품목삭제

- 품목등록리스트에서 등록한 품목 선택 후 삭제 기능

⑤ 품목등록 완료 후 다음으로 이동

- 품목 등록 현황 리스트 (총 4건까지 품목 등록 가능)
  - 그 외 수출국가 인증 1건 또는 중국·신남방·북방 수출국가 인증 15건 = 총 1건
  - 그 외 수출국가 인증 1건 + 일괄 1건(중국·신남방·북방 수출국가 인증 15건) = 총 2건
  - 그 외 수출국가 인증 2건 + 일괄 1건(중국·신남방·북방 수출국가 인증 15건) = 총 3건
  - 그 외 수출국가 인증 3건 + 일괄 1건(중국·신남방·북방 수출국가 인증 15건) = 총 4건
  - 그 외 수출국가 인증 4건

품목등록현황 등록된 품목 개수 : 4 (※ 최대 4개) ※ 문의전화 : 02-2164-0173~8

그 외 수출국가 인증	3 개	중국·신남방·북방 수출국가 인증	15 개 ※ 품목추가 최대15개 (지원한도 이내)	총 예상협약금액	100,000 천원 ※ 최대 1억

순번	신청품목	수출예정국가	HSCODE	품목분야	인증명칭 (수출국가구분) 분야코드	예상소요비용(천원) 예상협약금액(천원)
1	신북방품목1	브루나이	010231	기타	CEL (중국·신남방·북방 수출국가)	100
					CoC-ETC2	7,000
2	신북방품목2	인도네시아	010391	기타	CEL (중국·신남방·북방 수출국가)	100
					CoC-ETC2	7,000
3	신북방품목3	캄보디아	120400	기타	CEL (중국·신남방·북방 수출국가)	100

- 제출서류등록

필수 제출서류

필수서류	2019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	파일 선택	등록
	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	파일 선택	등록

- 파일선택 → 제출서류 선택 → 등록 버튼 선택

평가 제출서류

※ 평가자가 식별가능한 파일 업로드(50MB까지 업로드 가능), 업로드 가능 파일(hwp, xlsx, xls, pdf, ppt, pptx, png, jpg, jpeg, gif, bmp, doc, docx, zip)

인증획득 필요·가능성	시험·인증기관 접수증 및 견적서 (고비용인증의 경우 견적서 필수 업로드)	파일 선택 서류 : 신청품목의 시험·인증기관의 접수증 및 견적서 ※ 컨설팅기관 견적서 평가점수 미인정, 단 예상소요비용은 인정	등록
	해외지식재산권 보유기업	파일 선택 서류 : 해외특허(출원 또는 등록증, 전용실시권포함) 또는 해외상표(출원 또는 등록증, 전용실시권포함) 1부 * 개인기업은 대표자, 법인은 법인명으로 등록 된 경우만 인정 * 국내특허·상표 미인정	등록

- 기업정보 등록에서 기업특성 체크 항목 확인 → 파일선택 → 제출서류 선택 → 등록 버튼 선택
- 제출서류 미 등록시 신청 미완료 됨

- 개인정보 및 정보통신활용 동의서

◇ ☑ 개인(신용)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(대표자용)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(담당자용),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에 모두 동의합니다.

◇ ☑ 개인(신용)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(대표자용) (필수)

중소벤처기업부는 "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"과 관련하여 『개인정보 보호법』제15조제1항제1호, 제17조제1항제1호, 제24조제1항제1호, 『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』 제32조제1항, 제33조, 제3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(신용)정보의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.

1. 개인 또는 법인(신용)정보의 수집.이용에 관한 사항

① 개인 또는 법인(신용)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
귀하의 개인 또는 법인(신용)정보는 [중소벤처기업부]의 "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"과 관련하여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귀하의 개인 또는 법인(신용)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·이용됩니다.

◇ ☑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(담당자용) (필수)

중소벤처기업부는 "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"과 관련하여『개인정보보호법』제15조제1항제1호,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(신용)정보의 수집·이용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.

1. 개인(신용)정보의 수집·이용에 관한 사항

①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
귀하의 개인정보는 [중소벤처기업부]의 "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"과 관련하여 지원대상 선정과정 및 지원기간 동안의 연락·확인 목적으로 수집·이용됩니다.

◇ ☑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(필수)

1. 목적

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"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"에서 신청기업 지원이력 정보를 수집, 분석하여 정책수립에 활용

2. 수집·조회 및 활용 정보

① (기업정보)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,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
② (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)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업일, 휴업일, 폐업일,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,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,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,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제25조에 근거한 "고용장려금 지

※ 다음 버튼 클릭 후 "최종제출"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완료 하세요.

저장 후 다음 버튼 클릭

이전 ① 저장 ② 다음

- 개인(신용)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(대표자용)
  - 대표자의 주민번호 (채무불이행 조회)
  - 대표자의 이메일, 연락처 등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(담당자용)
  - 관리책임자의 이메일, 연락처 등
-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
  - 기업정보 및 지원 이력 등

- 신청서 최종 제출

◇ 서류접수 방법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.
이에 지방청에서는 별도 서류접수를 받지 않으니,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◇ 신청완료 방법 : 신청서 내용 확인 > 최종 제출 버튼 클릭 > 사업참여현황 > 진행상태(신청완료) 확인

◇ 신청서 수정 방법 :
사업참여현황 >신청서 수정 버튼 클릭 >내용 수정 >마지막 단계 최종 제출 필수 클릭 >사업참여현황 >진행상태(신청완료) 확인
※ 신청서는 접수 기간내 최종 제출 후에도 수정 가능합니다.

◇ 유의사항 :
- 접수마감 이후 신청서 수정 불가(접수기간 내 신청서 수정 가능)
- 최종제출 시 지침을 숙지 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에 신청한 참여기업에게 있음

신청 중 포기기능 | 신청서 내용확인 | 신청서 최종제출

이전 | 신청포기 | 신청서 내용확인 | 최종제출

- 신청 중 포기 할 경우 신청포기 버튼 클릭
- 신청서 작성 후 최종제출 버튼을 눌러야 정상 접수 됨

해외인증기술교육

» 해외규격인증획득을 위한 요구사항에 및 절차에 관한 기초/심화과정 교육 (가점 1~3점 부여)

일반교육	심화교육
• 해외인증 획득을 준비하는 기업에 대하여 인증에 대한 기본 개념과 절차 등을 전반적으로 인지 및 숙지 할 수 있도록 일반교육 지원(1일 과정) – **가점 1점**	• 중소기업의 인증획득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인증담당자를 대상으로 인증준비사항부터 기술문서작성, 실습 등 심화교육 지원(2~3일과정) – **가점 3점**

국제세미나

» 중소기업 인증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 및 최신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현지 시험인증기관 담당자를 초청, 현장 피드백 및 애로사항 해소 (가점 1점)

신청방법

- STEP 1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에 접속 (http://www.exportcenter.go.kr)
- STEP 2 회원가입 후 수출지원사업 바로가기
- STEP 3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
- STEP 4 교육 신청

해외규격인증 교육 수료증 발급방법

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평가시 가점이 부여되는 해외규격인증 교육
수료증은 온라인신청자, 현장 신청자 관계없이 모두 온라인 발급

온라인 신청자 수료증 발급 방법

- STEP 1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에 접속 (http://www.exportcenter.go.kr)
- STEP 2 로그인 → STEP 3 수출지원사업
- STEP 4 해외규격 인증획득지원 → STEP 5 교육신청
- STEP 6 교육신청조회 → STEP 7 해당 교육명 클릭
- STEP 8 우측 하단 수료증 인쇄 버튼

현장 신청자 수료증 발급 방법

- 현장 당일신청서를 작성하신 분은 사업자등록번호, 참가자 성명, 직책, 생년월일 필수로 작성후 제출시 전산 반영
  (기존 회원은 로그인, 비회원은 회원가입 후 확인 가능)
  (1-2일 소요, 교육일자로부터 2일 이후에 확인요망)

- STEP 1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에 접속 (http://www.exportcenter.go.kr)
- STEP 2 로그인 → STEP 3 수출지원사업
- STEP 4 해외규격 인증획득지원 → STEP 5 교육신청
- STEP 6 교육신청조회 (오프라인)
- STEP 7 우측 하단 수료증 인쇄 버튼

유의사항

① 신청시 – 견적서 항목

- 평가항목 중 견적서 제출 부분은 필수 사항은 아님 **(단, 고비용인증의 경우 필수 제출)**

  - 컨설팅기관에서 시험비 · 인증비를 포함하여 발행한 견적서 평가 점수 인정 불가

  (단, 시험·인증기관에서 컨설팅기업으로 발행한 견적서와 컨설팅기관에서 중소기업에게 발행한 견적서 포함이면 인정)

② 완료보고서 – 증빙서류 제출시

- 인증 획득에 소요된 비용 확인을 위해 각 해당기관에서 발행한 견적서(Invoice)와 송금증 제출

  (단, 중국, 러시아 등 특수성이 짙은 국가의 경우 현지 대행 위탁시 송금내역 확인 불가 사례가 있음으로 각별히 주의)

컨설팅기관에서 시험·인증비를 전부 대리 납부한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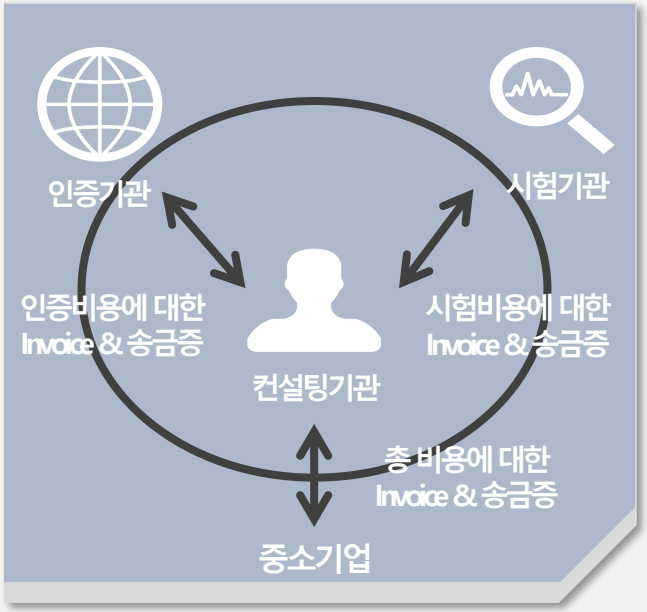

중소기업에서 시험·인증비를 직접 납부한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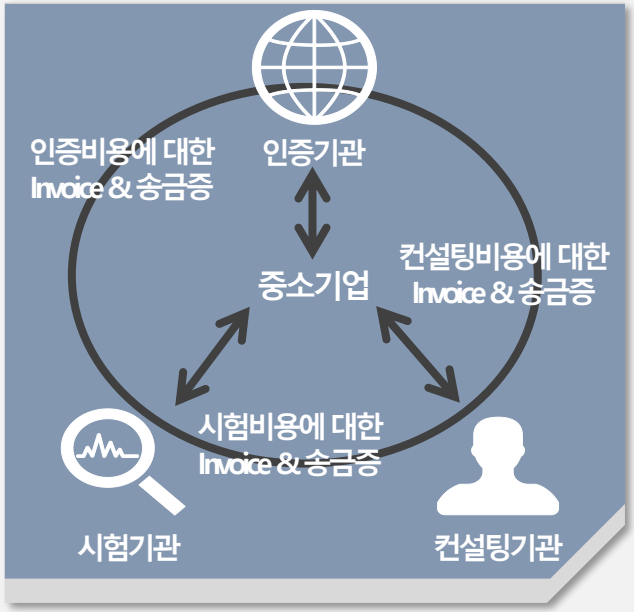

중소벤처기업부 KT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

감사합니다

2020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설명회

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(KTR) 수출인증사업단
문의처 : 02-2164-0173~0178